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4조제1호)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시 최소 투자 금액 실적 요건(3년간 1억원→ 3년간 5천만원) 완화

나.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제2항제3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펀드인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조합원 1인으로 산정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호, 제17조제1호, 제26조제1호, 제37조제1호)

피투자기업의 M&A 등에 따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5년 내 처분의무 면제

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회사 겸영사 지분 처분 유예기간

부여(안 제17조제3호, 제26조제3호)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피투자기업인 창업기획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후적·비의도적으로 벤처투자회사 등을 겸영할 시,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그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호)

창업기획자에 허용되는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요건 중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대상을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

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거래제한 규정 정비(안 제26조 제4호, 제37조제3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벤처투자회사, 벤처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거래제한 명시

사. 달러 기반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안 제34조)

벤처투자조합이 달러 화로 결성·운용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

아. 특수목적펀드 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제7항)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공급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

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의2제1항)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1,000억원→500억원) 및 최초 출자금 요건(200억원→100억원)을 완화

차.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제1호·제2호·제3호)

1)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

- 임회사와 인수·합병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합병 후 9개월 내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 2)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인수·합병에 따라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1년 내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 3) 벤처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등의 취득을 허용

카.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5조제5항)

- 1)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칭을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변경
- 2)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을 의미하는 조문 명확화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18. ~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이하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를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이하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로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제9조제1호가목 중 “속하게 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을 “속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를 “합병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을 “속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합병하는 경우로서 창업기획자가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를 “합병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3호) 나목1)를 삭제하며,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해당 창업기획자가 설립한 회사일 것

3. 제16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다른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다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소유한 주식등을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소유한 주식 등을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다목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투자비율”을 “투자비율”로 한다.

제26조제1호가목 중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을 “속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회사가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를 “합병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벤처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회사와 주식등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회사가 주식등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인 경우

-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
- 2)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제26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벤처투자회사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
- 2)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제26조제3호가목 본문 중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식 취득일부터 6개월”을 “주식등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로, “주식을 최초의 주식”을 “주식등을 최초의 주식등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소유한 주식등을 등록

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라.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소유한 주식 등을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4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나.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제3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총액”을 “총액(국내 또는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미화로 출자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액”을 “금액(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미화)”으로 한다.

제35조제5항제3호다목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투자비율”을 “투자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하는”을 “투자(제1호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호가목 중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을 “속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조합이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를 “합병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나.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제36조제3호가목에서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1,000억원”을 “5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u>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u> (이하 “ <u>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u> ”라 한다)	3. ----- ----- <u>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u> (이하 “ <u>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 -----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	1. ----- ----- ----- -----

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 다. (생략)

2. (생략)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 2. (생략)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단서 신설>

----- 5천만원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개인투자조합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
는 경우로서 주식의 교환
· 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
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
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
내인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
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
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
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
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생략)

나. -----

-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창업기획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

-----.

1. -----

가. -----

----- 된 -----

- 나. -----

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
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창업기획자가 주식의 교
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창업기
획자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
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
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2.·2의2. (생략)

<신설>

- 경우-----

2.·2의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등
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신 설>

<신 설>

3. 제16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다른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다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소유한 주식등을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소유한 주식등을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4. -----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창업기획자가 직접 <u>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배일 것</u> 2)·3)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삭 제> 1)·2) (현행 2) 및 3)과 같음)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생 략)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

가.·나. (생략)

다.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투

자비용을 달리 정하는 벤

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마. (생략)

4. (생략)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

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투자비용-----

라.·마.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에 대한 예외) -----

-----.

1. -----

가. -----

----- 된 -----

경우(벤처투자회사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
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
는 경우로서 벤처투자회사
가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부터 5년 이내인 경우(벤
처투자회사와 주식등의 발
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
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
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 경우-----

<신 설>

2. 법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생략)

<신 설>

다. 벤처투자회사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회사와 주식등을 교환·이
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
서 벤처투자회사가 주식등
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
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9
개월 이내인 경우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

2)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
회사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벤처투자회사가 아래의
어느 하나의 회사와 합병
하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3. 제25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나. (생략)

<신설>

에 처분하는 경우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

2)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

--

가. -----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등-----
-----, -----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6개월

주식등을 최초의 주식등의

-----.

나. (현행과 같음)

다.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

<신 설>

다.·라. (생략)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

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
는 경우. 이 경우 소유한
주식 등을 등록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라.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
이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
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 등으로 등록하는 경
우. 이 경우 소유한 주식등
을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마. • 바.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4. -----

----- . 다만, 다음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다음 각 목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나. 벤처투자회사가 그 주요 주주 및 계열회사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
 1. ----- 총액(국내 또는 해외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나. (생략) 2. 출자 1좌의 <u>금액</u>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 5. (생략)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 ④ (생략)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략)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가. ~ 나. (생략) 다.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투자비율을</u>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생략) 4. ~ 7. (생략)	<u>금융계좌를 통해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미화로 출자받는 금액을 포함한다)---</u> 가.·나. (현행과 같음) 2. ----- <u>금액(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미화)</u>----- ----- 3. ~ 5. (현행과 같음)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2. (현행과 같음) 3.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u>투자비율</u>----- ----- ----- 라. (현행과 같음) 4.~ 7. (현행과 같음)
---	---

⑥ (생략)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 5. (생략)

⑧ (생략)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 투자(제1호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포함한다)하는
---.

1. ~ 5.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조합이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1. -----

가. -----

----- 된 -----

나. -----

----- 경우 -----

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부터 5년 이내인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3.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4. (생 략)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법 제63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나.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제36조제3호가목에서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

-- 500억원-----.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 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u>200억원</u> 이상 이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 ----- ----- <u>100억원</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연 락 처	(044) 204 - 7711